

주주님 귀하

제 28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공고)

주주님의 대내 평운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4 조에 의거 제 28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 정관 제 24 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2026 년 03 월 26 일(목) 오전 11 시 00 분

2. 장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 동 지하 2 층 세미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28 기(2025 년 1 월 1 일 ~ 2025 년 12 월 31 일)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붙임 1. 정관 신규대조표]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김문수 선임의 건

제 3-2 호 의안 : 사내이사 정윤석 선임의 건

제 3-3 호 의안 : 사내이사 양승환 선임의 건

제 3-4 호 의안 : 독립이사 고범석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비고
사내이사	김문수	1947.07	2년	現)한성크린텍(주) 사내이사 現)㈜제이에스아이홀딩스 사내이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사회	재선임
사내이사	정윤석	1967.01	2년	現)한성크린텍(주) 부사장 前)삼성이엔에이(주) 전문위원	-	이사회	신규선임

사내이사	양승환	1961.08	2년	現)㈜위지트 대표이사 前)파워넷㈜ 대표이사	-	이사회	신규선임
독립이사	고범석	1972.10	2년	現)한성크린텍㈜ 독립이사 前)㈜지인터내셔널 본부장	-	이사회	재선임

-제 4 호 의안 : 상근감사 문귀연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비고
감사	문귀연	1967.03	3년	現)한성크린텍㈜ 감사 現)법무법인 준 대표변호사	-	이사회	재선임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규정 일부 변경의 건 [붙임 2. 임원퇴직금지규정 신규대조표]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위임장(법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6 년 3 월 16 일 오전 9 시~2026 년 3 월 25 일 17 시(기간 중 24 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안내사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 주전까지 회사홈페이지(<http://www.hscleantech.com/>)의 전자공고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03월 11일

한성크린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태석, 정진학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직인
생략

[붙임1. 정관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제4조【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hscleantech.com/)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제4조【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홈페이지(https://hscleantech.com/)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전자공고 홈페이지 주소 변경</p>
<p>제15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제15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을 반영함.</p>
<p>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25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신설)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p>	<p>상법 제542조의14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정관에 정함</p>
<p>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및 증명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및 증명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p>
<p>제34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34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p>
<p>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④</p>	<p>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설)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p>	<p>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p>
<p>제39조의2【이사의 책임, 보상 및 책임감경】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의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가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의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9조의2【이사의 책임, 보상 및 책임감경】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의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p>	<p>②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③ 과도한 면책가능성 배제 및 책임보완으로 대체</p>
<p>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상한을 정하되, 위 상한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액수는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p>	<p>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한 이사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상법 제 33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그 위임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함</p>
<p>제56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⑤</p>	<p>제56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설)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p>	<p>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준일을 사전에 공고하여 절차의 명확성 확보</p>

[붙임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4조 퇴직급여의 계산</p> <p>① 임원의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최근 3개월간 평균보수) * 재임기간 * 지급률] 로 한다.</p>	<p>제4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사부담금 수준</p> <p>① 회사는 대상자의 퇴직금으로 매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부담금으로 각 대상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p> <p>[연간보수총액 * 1/12 * 재임월수/12 * 지급률] 로 한다.</p> <p>② (신설)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총액이라 함은 급여, 각종 수당 등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다음의 항목은 제외한다.</p> <p>1.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상여</p> <p>2.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p> <p>3. 기타 연간 보수총액 산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항목</p>	<p>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내용 변경</p>
<p>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p> <p>① 근속 개월 수의 산정은 선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p>	<p>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p> <p>① (삭제)</p>	<p>1항 삭제 (불필요)</p>
<p>제6조 퇴직연금의 가입과 불입</p> <p>① 회사는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에게 제4조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매월 또는 1년에 1회 이상 해당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 또는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한다.</p>	<p>제6조 퇴직연금의 가입과 불입</p> <p>① 회사는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다.</p> <p>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에게 제4조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매월 또는 1년에 1회 이상 해당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한다.</p>	<p>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내용 변경</p>
<p>제7조 퇴직금의 중간정산</p> <p>① 회사는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②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은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은 익일부터 퇴직일까지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p>	<p>제7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삭제)</p>	<p>조항 전문 삭제 (불필요)</p>
<p>제8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p> <p>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p>	<p>제8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삭제)</p>	<p>조항 전문 삭제 (불필요)</p>
<p>제14조 퇴직금 등의 지급 및 수령권자</p> <p>①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현금 외 회사의 자산(재고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보험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② 퇴직금 등의 수령권자는 퇴직자이며,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p> <p>③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퇴직자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분묘 기념비 설치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p>	<p>제14조 퇴직금 등의 지급 및 수령권자 (삭제)</p>	<p>조항 전문 삭제 (불필요)</p>